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00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0028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나1061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5가단3854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대중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극성, 소병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이형철

피고, 상고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상

담당변호사 전휴정, 김성운, 박계성, 나승주, 장재익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지태, 박희승, 이성이, 유영진, 박윤정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용현, 김윤찬, 안병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래스

담당변호사 이강국, 황찬현, 남영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이광범, 김나연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나10615 판결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대표자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위반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981. 8.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D대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원고가 K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실재하였고 위 등기명의자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나 종중의 실체 판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